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등 록 번 호	20241140	홈페이지
최초 등록일	2024.08.20	
최종 등록일	2025.05.29	

은비갈비 정보공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은비갈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59, 3층(잠원동, 라성빌딩)

■ 대 표 전 화 번 호 1688-4528 ■ 담당부서 가맹사업부 1688-4528

목 차

I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5.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II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시작일
2. 가맹사업 연혁
3. 가맹사업 업종
4. 바로 전 3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5. 바로 전 3개년도 말 달래해장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6. 기타 가맹사업 현황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10. 광고·판촉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
12.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形)의 선고

Ⅳ. 가맹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8. 광고 및 판촉 활동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 · 훈련의 주체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직영점 목록 및 주소
2.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식회사 달래에프앤비	은비갈비 외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59, 3층(잠원동, 라성빌딩)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 등록일	대표	대표팩스번호
	2021.11.11	2021.11.29	박성현	T. 1688-4528
	법인 등록번호	110111-8087995	사업자 등록번호	875-86-02385

- 대표이사 임동혁에서 박성현으로 2025년 03.24일 변경됨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대표 박성현	은비갈비 외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59, 3층		
	이사 정연곤		(잠원동, 라성빌딩)		
	이사 장동현		대표자 박성현	대표전화번호 T. 1688-4528	대표팩스번호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과의 인수·합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다른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 사업을 인수함.	해장국 (428-15-01496)	달래해장	2022.3.1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56길 4, 1층 101호(서초동))	이재호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은비갈비	없 음
상 호	은비갈비 00점	없 음
상표(서비스표)	은비갈비	출원번호: 4020240078316 'T-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참조
그 밖의 영업표지	 	동일 브랜드명의 그 밖의 로고

5. 가맹본부의 재무 현황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현황 요약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현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	6,217,894	4,135,830	2,082,063	11,040,345	2,168,142	1,810,787
2023	4,521,136	2,567,346	1,953,789	16,849,837	-844,566	-600,019
2024	4,609,434	3,174,481	1,434,953	8,159,070	-666,516	-518,836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직영점 포함) 관련 매출액은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박성현	대표	2025.03.24.~ 현재	(주)달래에프앤비	사업 총괄
	임동혁	대표	2024.08.01.~ 2025.03.24. 사임	(주)달래에프앤비	사업 총괄
	정연곤	이사	2022.07.28~ 현재	(주)달래에프앤비	물류 유통
	장동현	이사	2024.08.01~ 현재	(주)달래에프앤비	총무 기획
	조승모	대표	2021.11.11~ 2024.08.01 사임	(주)달래에프앤비	사업 총괄
	조준모	이사	2021.11.11~ 2024.08.01 사임	(주)달래에프앤비	총무 기획
	이재호	이사	2022.07.28 사임	(주)달래에프앤비	운영 관리
	김직	이사	2022.01.07. 사임	(주)달래에프앤비	운영 관리

- 대표이사 임동혁에서 박성현으로 2025년 03.24일 변경됨.
- 임동혁은 2025년 03.24일 자로 사임함.
- 조승모,조준호는 2024.08.01.일 자로 사임 함.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1	1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달래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2022.02.~현재	달래해장(등록번호:20220154) 영업표지의 한식 맹사업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귀하가 당사의 은비갈비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사용허가일)
은비갈비	제43류	출원일 2024.04.29	출원번호 4020240078316	정연곤	출원 심사중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 저작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출원 심사 중으로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

『은비갈비』 가맹사업 시작일: 2024년 10월 28일

『은비갈비』 직영사업 시작일: 2024년 8월 22일

2. 가맹사업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달래에프앤비	은비 &	조승모	2024.08~2025.03.24. 사임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59, 3층(잠원동, 라성빌딩)
	은비갈비	임동혁		
(주)달래에프앤비	은비갈비	박성현	2025.03.24.~ 현재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59, 3층(잠원동, 라성빌딩)

3. 가맹사업 업종

영업표지	업종	
은비갈비	대분류	소분류(주요 상품)
	한식	국밥, 갈비찜, 갈비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4.12.31			2023.12.31			2022.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	1	1	0	0	0	0	0	0
서울	0	0	0	0	0	0	0	0	0
부산	1	0	1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1	1	0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바로 전 3개년도 말 『은비갈비』의 가맹점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	0	0	0	0	0	0
2023	0	0	0	0	0	0
2024	0	1	0	0	0	1

6. 기타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은비갈비』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 본부	(주)달래에프앤비	달래해장	20220154	한식	44/3	49/2	28/1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지역	2024년 말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							5곳 미만
서울	해당없음							5곳 미만
부산	해당없음							5곳 미만
대구	해당없음							5곳 미만
인천	해당없음							5곳 미만
광주	해당없음							5곳 미만
대전	해당없음							5곳 미만
울산	해당없음							5곳 미만
세종	해당없음							5곳 미만
경기	1							5곳 미만
강원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북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남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북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남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북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남	해당없음							5곳 미만
제주	해당없음							5곳 미만

※은비갈비 가맹점은 2024년 10월 1개점 open 하여 운영중임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달래해장』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	64일(2.1개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에서 바로 전 사업연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본 정보공개서의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8. 광고 및 판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및 판촉						

◦※해당 사항 없음

11. 가맹금 예치

- 당사의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보상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보상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당사의 운영방침이 변경된 경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달래에프앤비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28,100천원)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2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달래해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계약이행)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최초가맹금 내역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11,000	계약 체결일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위약금을 공제
교육비	₩4,400	계약 체결일	교육 개시 이전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개점 전 교육비
개점홍보물 제작 비용	₩5,500	계약 체결일	홍보용품 발주전 계약 해지	영업개시 홍보를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오픈홍보 및 광고 등
유니폼 구입 비용	₩2,200	계약체결 일	홍보용품 발주전 계약 해지	영업 운영시 소멸성 비용	
합계	23,100(vat 포함)				

2) 보증금의 세부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비용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5,000	계약 체결일	가맹금(로열티 포함) 미지급, 본 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및 물품 대금 미지급 등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 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원·부재 료 대금 포함)의 3배 이내

- 보증금은 귀하가 당사와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담보기간동안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보증금의 반환시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11,000	부가세 포함
교육비	₩4,400	부가세 포함
개점홍보비	₩5,500	부가세 포함
이행보증금	₩5,000	부가세 없음/보증보험가입
소모품 및 유니폼	₩2,200	부가세 포함
합계	28,100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VAT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30평(99㎡)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 계]	-	[109,810]	-	-	-	*현장 실측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간판	가맹본부	7,700	-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내부공사
인테리어(실내)	업체자율 (요청시 협력업체)	56,110	[1,870]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시공업체와 협의결정	점포 실정에 따라 변동 급,배기덕트공사포함
주방설비	별첨3. 참조	27,500	[917]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점포 실정에 따라 변동
집기류 (홀집기)	별첨3. 참조	7,500	-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점포 실정에 따라 변동
초도물품	별첨2. 참조	11,000	-	계약시 협의결정	물품발주전 계약해지시	점포 실정에 따라 변동
POS설비	협력업체 렌탈형 (월사용료有)	-	-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공급업체와 협의결정	
별도사항	각종 인허가, 인터넷 및 전화개설, 음향설비,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정화조공사, 어닝, 소방공사, 냉난방공사, 가스공사, 전기승압공사, 외부덕트공사, 익스테리어공사, 테라스, 화장실 별도					

- ◆ 위 표의 금액은 추정치로서 매장 규모 및 물가 인상, 디자인의 변동 등 사정에 따라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간판은 1면 전면 간판 기준이며, 매장 규모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인테리어는 매장 규모 및 매장 현장 상황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방매장 또는 대형마트 내, 백화점내 등 특수상권의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장 전용 평수가 33㎡ (10평) 미만의 경우에는 최소 기본 자재의 소요가 33㎡ (10평)과 동일하여 33㎡ (10평) 기준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 ◆ 귀하는 인테리어 등 권장 설비 품목에 관하여 귀하가 직접 시공·설치 할 수 있으나, 이의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시공·설치하여야 하며 당사에 기획관리비로 3.3㎡당 44만원 (부가세 포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주방 설비는 면적과 상관없이 최소 기본 설비가 필요하므로 상기 기재된 평당 단가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권장품목에 대해 귀하가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당사가 요구하는 디자인, 규격, 사양, 품질 등에 맞게 구비 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사오니 사용 전 반드시 당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초도 물품과 관련하여 초도 발주 물량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 업종 변경의 경우, 별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 희망자	1)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위치를 선정하여 오는 경우 기존 가맹점에 대한 영업 지역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신규 가맹점의 위치를 허가함. 만약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입지 변경 권유함
	2)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입지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의 최종 결정
	3) 가맹본부가 점포 입지를 선정해 놓은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입지 안내 → 가맹희망자와 담당자가 현장 확인 → 가맹희망자의 최종 결정

- 당사는 가맹희망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가맹점의 입지에 대해 조언을 하며, 입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합니다. 이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직원에게 가맹점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가맹희망자는 본인의 책임과 권한으로 가맹점 입지(제3자와 체결한 점포, 장비, 동산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 등)를 선정하였으므로 입지 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격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만 20세 이상일 것 - 위생교육 수료자, 보건증 소지자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 만 19세 이상일 것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보건증 소지자일 것

- 귀하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가맹점운영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 방법·공급업체

- 『은비갈비』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상기 내역은 매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점포 실측 후 계약체결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물품 내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 총매출액의 2.2% (총매출액 - 판매촉진채권 배달비용 등) <부가세 포함>	익월5일	해당없음	소멸성 비용	전월에 대한 대가
영업표지변경에 따른 간판변경비	가맹본부	교체보수 필요시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부득이한 경우 변경
점포환경 개선	간판:가맹본부 / 인테리어: 요청시 (협력업체)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중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미 시행 시 반환	판촉시행 후	정보공개서 p.45 참조
개점이후 교육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III-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실시후 반환불가	VII.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광고,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실시후 반환불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 등을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금전지급 의무의 지급기한 경과시 부담.
POS 월사용료	협력업체	월[11~55]	지정업체와 협의	해당사항 없음	사용 대가 지급	사용량에 따라 변동

- 광고·판촉 분담비에 관하여서는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중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을 참조 하시기를 바랍니다.
- 점포 환경 개선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분담 비율에 관하여는 “VII.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중 1.점포 환경 개선시 비용지원 내역”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 개점 이후 교육비에 관하여는 “VIII-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
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개월미만 매장은 차액 가맹점 산출을 제외 하였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등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 상태 및 취급 품목, 실제 재고의 수량 조사, 공급품의 보관 상태 등	부정기	문의 1688-4528
회계처리	영업 장부 및 회계자료의 작성유지 여부, 연매출액에 대한 자료요청 및 매출 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이상 및 요청시	문의 1688-4528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당사의 직원을 통하여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품목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 상태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의 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 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당사가 정보공개서 작성을 위해 귀하의 연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 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에 해당 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 계약에 한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당사가 대체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 수단이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 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 계약에 한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 기간,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 계약에 한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달래해장』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귀하가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양도에 앞서 서면으로 사전 승인 및 양수인 인터뷰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및 인터뷰 승인을 얻은 후에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기존 계약의 승계에 따른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가맹점 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와 이행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반면, 양수인이 완전한 계약기간의 신규 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 이행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가맹계약 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등이 일반적인 신규 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양수인이 상기 외 가맹본부가 주관하는 개점 홍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점홍보비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본부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 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사용 허가를 받은 영업 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기타 표시물(전화번호 안내, 포털사이트 등록 등)을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이때 철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가맹본부의 귀책 사유로 인해 종료 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 서류(매뉴얼 등)를 반환 하거나 가맹본부의 승인 하에 폐기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사용 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변형하여 가맹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 범위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점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지원 받은 기기 등을 임의 철거를 하지 못하며 지원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 기간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 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의 공급물
- 품의 특성상 유통기간 및 부패, 오·훼손 등의 문제로 인하여 반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당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최근 2개월 이내에 공급된 상품으로서 미사용 물품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완전물에 한하여 당사에 반품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달래해장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귀하는 당사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제/권유 기준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물품 및 상품을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은비갈비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2023년에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 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가맹본부 제공상품 일체 - 하단 3) “상품품목 및 권장가격”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사용되는 주재료와 부재료는 가맹본부와 협의된 사항들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시 표준화된 프로그램의 구성과 품질을 낼 수 있어야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은비갈비”의 타 가맹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제품 및 상품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미성년자	주류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은비국밥(얼큰돼지국밥)	가격표 제공	서면이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 통지, 홈페이지 공지 등	2024년12월 말 기준 (계절 및 지역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은비갈비찜			
은비갈비			
은비삼겹살			
은비돼지막창			
돼지고기덮밥 및 백반			
멸치국수			
비빔국수			
된장찌개			
음료수 및 주류			

- 당사는 시장 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 및 합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 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국밥, 갈비찜, 갈비 전문점	은비갈비	없음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일반상권	‘가맹점 사업자’가 선택한 영업지역에 대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을 중심으로 하여 ‘가맹본부’의 상권조사 분석 방법 기준에 따라 물리적 장애 및 심리적 장애 요인을 종합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 가. 물리적 장애: 4차선 이상의 도로(차량 속도 30km), APT, 학교의 외벽, 하천, 고가도로, 산, 공원, 철도, 지하도와 같이 도보 통행인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접근에 장애를 주는 것들을 구분. 나. 심리적인 장애물: 보행 시 위험을 느끼는 외벽, 경사도로(15~20°C) 이루어진 오르막길, 통행인이 한적 하고 기타 요인들로 통행인의 심적인 부담을 주는 경계지점. 다. 사회,문화적인 장애물: 관습에 의한 사람들의 이동구획이 지어지는 경향 구분. 라. 경제적인 장애물: 소득수준에 따라 이동이 구획되는 경향 구분.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특수상권	특수상권 내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 마트, 종합쇼핑몰, 지하상가, 대학, 기차역, 터미널, 경기장, 휴게소, 종합병원, 놀이공원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 상권을 의미 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기관 입주, 아파트 입주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한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으로 수요가 현저하게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계약기간 만료 전 180 일~90 일 사이 통보)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계약기간 만료 전 60 일 이내 합의 여부 회신)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재 조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동안 기존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영업지역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영업지역 변경(재조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거나 동의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

점사업자의 영역 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에게 배달 등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 권유 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8.80%	81.2%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 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 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 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은비갈비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3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 → ②, 아니오 → 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 → ④, 아니오 → 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 → ⑤, 아니오 → 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 → B, 아니오 → 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 → C, 아니오 → 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 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 → B, 아니오 → 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 → B, 아니오 → 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 → E, 아니오 → 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 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 상의 가맹금 및 협력업체 채무 등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7조 2항 각호 및 각목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 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 · 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조③항	26조 ①항 각호 및 38조 ①항 2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 표시의 사용 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4조③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조④항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15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7조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의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	20조①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 없이 임의로 메뉴를 개발·변경·판매·사용하는 경우	21조②항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메뉴 및 변경·수정·보완된 메뉴를 고객에게 제공·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21조③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4조⑥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서면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필수강제(사입금지)품목을 자점매입 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5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9조③항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및 보고사항 등에 관하여 허위로 통지하거나 보고하는 경우	30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판촉의 광고·판촉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31조, 32조, 33조	27조 ①항 16호 27조 ①항 17호 39조 ①항 2호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나, 사전 승인 없이 점포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43조 ③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지불할 대금지급이 지급기일까지 미이행된 경우	27조 ①항 16호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27조 ①항 17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9조 ①항 2호	

나.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9조③항 각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다.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 절차 없이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9조④항 각호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당사의 시정이 없을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부여한 영업거점 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39조 ②항 각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마.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해

지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요청 후 양 당사자가 서면합의에 의하여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맹본부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 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 합의를 거쳐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5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본부 1688-4528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운영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교육 훈련에 대한 비용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 비용, 개점 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 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양수인에게 양도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와 계약한 영업지역 내에서 본 계약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의 상속, 대리 행사, 위탁 등

- 가맹점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인 서면 통지시 가능	모든 권리 의무	서면통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권리의무	서면 통지 및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불가능	-	-	가맹본부 외 제3자의 위탁 경영 불가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가맹계약의 존속 기간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의(독립 점포 및 타사 가맹점, 가맹본부 운영을 포함한다)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및 계약종료 후 1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계약서 별첨2에 표기된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달래해장』과 동일한 컨셉 및 노하우를 사용하는 “국밥 및 갈비찜 전문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본부

-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 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달래해장』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 일수 제한

-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자 율 (24시간 권장)	365일 연중무휴 (단, 명절제외, 특수상권은 해당상권내 영업방침을 따름)	문의 1688-4528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당사의 규정상 7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중단할 경우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 (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의 제한에 있어서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그 운영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제한 없음	직접 근무	제한 없음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 점포 (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주방 위생, 매장 청소 현황 등	방문 및 유·무선 등을 통하여 분기1회 이상 수시 관리·감독 (당사 : 1688-4528)	본사 가맹관리팀	변동가능
친절도	고객 접대, 종업원 교육 등		본사 가맹관리팀	변동가능
품질 관리	레시피 준수, 자점매입 여부 확인 등		본사 가맹관리팀	변동가능

- 당사는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점검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공지됩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맹점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및 영업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또는 당사에서 지정하는 자가 상기 사항 점검이나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자신의 가맹점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가맹본부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a)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1/N)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 점부담액 제시(명세 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전국 행사)
	(b)상품광고+ 가맹점 모집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1/N)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 광고	광고비의 100%	없음		
판촉 행사	전체행사	행사에 따라 차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측간 균등분담 원칙)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 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 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개별행사	없음	판촉비의 100%	가맹본부 사전승인	단독행사

○ 전국 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 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 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 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중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한 광고를 시행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광고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 광고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팸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광고·판촉비용의 소모적인 낭비를 줄이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당사와 사전 협의 하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 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변심 등 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아래의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로부터 할인이나 지원받은 금전 또는 무상으로 지원받은 설비나

상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도 및 승계, 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해당 점포의 내·외장 공사 등을 착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미 진행된 내외장 공사 관련 비용 및 해약에 따른 철거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

해약 항목	해약 요청 사유 및 일자	위약금
개점 전 해약	1. '가맹본부'가 최초교육/시설공사/집기/설비의 설치 작업에 착수하기 전 금액 가. 최초교육 진행 중인 경우 가맹 비중 영업 방법 전수비 4백만원 나. 최초교육 진행전인 경우 해당 없음 다. 시설공사/집기/설비 설치 전 설치 준비 소요 금액 2. '가맹본부'가 시설 공사/집기/설비의 설치 작업에 착수한 금액 가. 시설공사/ 집기/설비 설치의 공정별 금액 대비 공정진행 소요 금액 3. '가맹본부'가 점포 선정 과정에 소요된 모든 제반 용역비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가. 제반 용역명세:출장비(교통비,숙식비,인건비,기타 비용) 4. '가맹본부'가 매장 실측 후 계약 해지된 경우 실측 과정에 소요된 모든 제반 용역비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가. 제반용역명세:출장비(교통비,숙식비,인건비,기타비용)	최 초 교 육 비 4백만원 및 실제 비용 산 출 금액
중도해약	1. 개점일 이후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과거 1년간 (영업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는 그 영업기간 중)의 로열티의 (카드 매출액의 2.2%/부가세 포함) 4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 2. 개점일 이후 1년부터 3년까지의 기간에 해약을 신청하는 경우 :과거1년간의 로열티의 (카드 매출액의 2.2%/부가세 포함) 4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	운영점의 로열티의 개월 분 4

- ③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계약의 제17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제23조(자점매입)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며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강제)품목을 자점 매입(사입)하는 경우, 당사에 “자점 매입(사입)한 금액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해지 및 종료시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의무 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10만원의 지체 배상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체 배상금은 최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⑥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에 대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을 당사가 지불한 경우에는,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⑦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등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상대방은 본 계약 상 구제 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⑧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 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안에 국한되며, 다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 홈페이지 및 직접방문	D-46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상담	- 전화 상담 및 본사방문 상담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14일 (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 계약체결	
점포 개발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예치	- 가맹 계약 체결 - 은행에 가맹금 예치	D-30~29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D-29~26	
도면 작성 및 인테리어공사	- 인테리어협의 / 별도 / 추가공사 - 인테리어 공사, 설비공사 실시	D-25~2	
교육	- 교육(개점전 교육)	D-8~1	
소품 및 초도물품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초도물품공급	D-1~2	
오픈	- 영업 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 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

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 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환경개선에 소요 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 환경 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항목	내용
점포환경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간판 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드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소요 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 환경 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 개선 : 40%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

	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 사유	○ 점포 환경 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 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 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 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 기간	지원 금액	비고
개점지원	가맹점 오픈 시 수퍼바이저 인력 지원	가맹점의 매장, 예상 매출액에 따라 인원 수 차등 지원	오픈일로 부터 3일간	인력 지원에 따른 비용 전액 당사 부담	변동 가능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 부담	비 고
가맹 본부 필요시	계약이행, 표준화, 판촉,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 활성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 본부 1688-4528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계약이행, 표준화, 판촉,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 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 지도 계획서 (경영 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소요 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협의 후 개별 계약체결 → 경영 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 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함을 원칙으로 함.	가맹점 부담	

※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경영 지도는 개별 요청 사항에 따라 양 당사자의 협의 후 개별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문의 여부,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은비갈비』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자금지원이나 매출 부진에 따른 경영지원 제도를 운영 하고 있지 않습니다.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 내용

-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점 전 교육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메뉴교육	메뉴 교육, 주방 관리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서비스 및 운영 교육	접객 방법, 마인드 교육, 위생교육, 매장운영 등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2) 개점 후 교육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수시교육	신메뉴 및 필요시 전달 교육 등	실습 교육	1일(3~6h)
특별교육	점주의 요청에 의한 특별교육	실습 및 강의 교육	1일(3~6h)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부가세 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5일 (35h~40h)	IV-1) 최초 가맹금 중 교육비 참조	최초 계약시 이수 (1일당 7~8시간 교육기준)
개점 후 교육	수시	1일(3~6h)	기본이론교육 무료 실비 발생시 청구	신메뉴 및 필요 시 전달 교육 등
	교육			
	특별	1일(4~8h)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산정	점주 요청에 의한 교육
	교육			

3. 교육 · 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2인 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1인 이외의 다른 직원에 대한 추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인원 추가에 따른 추가 비용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불 하고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 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점명	주소
1	서울	신사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4, A동 101호, 102호(논현동, 대영빌딩)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4개월 2일(127일)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POS상 매출액을 근거 임.

※영업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매출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정보 공개 서 내 용 문 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제무재표 및 손익계산서

2024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3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구입강제품목

필수강제 품목

2025년 01월01일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3.구입권장 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4. 주요 품목별 직전사업연도 공급가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수령확인서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 하겠습니다.

구분	가맹점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 기재요망				
1				
2				
3				
4				
5				
6				
7				
8				
9				
10				

수령일자: 20 년 월 일

가맹본부 : (인) 또는 서명

수령자 :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수령확인서

[*주의 : 성명, 수령일시와 수령 장소 등 반드시 자필기재]

성명		전화번호	
주소			
수령일시	20 년 월 일 시	수령장소	
제공받은 사실	“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기재사항들은 전부 가맹희망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만 유효합니다.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정보공개서 주요 목차
별첨: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10개 점포 가맹점사업자 현황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 수령자 :

(인) 또는 서명

[* 계약자와 수령자가 상이한 경우, 계약자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